2023년 「여성과학기술인 R&D 경력복귀 지원사업」 상반기 공고

이공계 여성의 R&D 분야 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, 2023년 상반기 「여성과학기술인 R&D 경력복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7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

1. 사업 목적

○ 출산,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&D 관련 분야 복귀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

2. 지원 기간 및 분야

- 지원 기간: 2023년 5월 1일 ~ 2024년 4월 30일
- 참여 기관의 인력 활용 수요에 따라, 2개 트랙으로 지원

트랙		지원조건	지원규모	지원인원
1	경력복귀 과제지원	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신규 채용 시	신규과제 000개 내외	활용책임자 1인당 2명
2	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	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인턴 3개월 채용 후 일반직 전환 시	신규 5건 내외	1개 기업당 1명

[※] 트랙1과 트랙2 중복 지원 불가

3. 신청 기간

- 신청 기간: 2023년 2월 27일 ~ 2023년 4월 9일 23:50
- 각 사업 트랙별 조건 및 절차 등 상이

4. 문의처

○ R&D경력복귀지원팀 : 02-6411-1011, 1010 / hhkim@wiset.or.kr

[※] 트랙2.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신청대상 중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트랙1. 경력복귀 과제 지원 후보군으로 활용(지원 조건은 트랙1과 동일)

트랙1. 경력복귀 과제지원

1. 지원 개요

가. 지워 규모

- 신규과제 000개 내외 선정
- 신규과제의 경우 활용책임자* 1명당 인력 2명까지 지원 가능
 - *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업무수행, 조직적응 등을 지도·관리하는 책임자
- 나. 지원 기간: 최대 3년
 - ※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

다. 지워 내용

○ 지원 금액

구분 학·석사		박사	
정부지원금 최대 2,100만원/연		최대 2,300만원/연	
기준연봉 3,000만원/연		3,300만원/연	

-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,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
 - ※ 연봉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(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)
- 정부지원금의 5%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
-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(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) ※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[참고1] 확인
- 교육·멘토링: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에게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(연 1회 필수 참여)
 - ※ 사업 참여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함
 - ※ 교육 일정은 사업 참여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

2. 지원 자격

가. 참여 기관

○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

<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(어느 하나 해당 시) >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2에 해당하는 기관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
-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
-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

나. 참여 인력

-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,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
 - ※ 학사(전문학사 포함) 또는 비이공계 석·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
 - ※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, 계약직,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(관련 증빙 필수)
 - ※ 의·약학, 치의학,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(단, 수행업무가 R&D 관련 업무이어야 함)
- (재도전 특별지원) 기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, 최대 3년의 지원 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지원(단, 1회에 한함)
 - ※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
 - ※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

----- < 재도전 특별지원 내용 예시 > ------

- (예시 1)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B연구원 :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(잔여기간 6개월 이상)
- (예시 2) 기존에 2년 10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C연구원: 지원불가(잔여기간 6개월 미만)
- 참여인력은 연구직, 기술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

----- < 업무 내용 예시 > ----

- 기초연구. 기술 및 제품 개발. S/W 개발. 산업디자인. 특허 조사·분석. 시장 기술조사
- 연구장비·기자재 운용, 설계, 도면의 작성, 가공·조립, 실험·검사·측정
- 전문적 연구지원, 정보 가공·분석, 특허출원
- 시제품 설계 시험·제작, 기술마케팅, 기술영업, 기술협력 등
- ※ 연구행정직 불가

트랙2.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

1. 지원 개요

가. 지원 규모: 신규 5건 내외(기업당 1명 신청 가능)

나. 지원 기간: 최대 3년

○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

○ 인턴십 계약 3개월 이후 일반직(정규직 또는 계약직) 전환 필수

※ 일반직 전환 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규모 내에서 우선 선발

○ 일반직 전환 이후 트랙1. 경력복귀 과제지원의 기준연봉, 사업비 산정 기준 (교육훈련 등을 위한 필수 연구활동비 최소 5% 책정) 등 적용

다. 지원 내용: 인턴십 기간과 일반직 기간 구분

○ 지원 금액

구분	학·석사(2,100만원/연)		박사(2,300만원/연)	
⊤世	인턴십	일 반직	인턴십	일반직
정부지원금	300만원	1,800만원	300만원	2,000만원
필수 연구활동비 5%	미적용	적용(90만원)	미적용	적용(100만원)
기준연봉	3,000만원/연		3,300민	<u>-</u> 원/연

-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,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

※ 연봉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(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)

- 일반직 전환 이후 정부지원금 중 5%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(학·석사 90만원, 박사 100만원)
- 인턴십 기간은 시간선택제 적용 불가
 - ※ 일반직 기간부터 시간선택제 적용 가능,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
 - ※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[참고1] 확인
- 교육·멘토링: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에게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(연 1회 필수 참여)
 - ※ 사업 참여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함
 - ※ 교육 일정은 사업 참여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

2. 지원 자격

가. 참여 기관

○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기업

<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(어느 하나 해당 시) >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2에 해당하는 기업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
-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
-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업

나. 참여 인력

-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,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
 - ※ 학사(전문학사 포함) 또는 비이공계 석·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
 - ※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, 계약직,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(관련 증빙 필수)
 - ※ 의·약학, 치의학,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(단, 수행업무가 R&D 관련 업무이어야 함)
- (재도전 특별지원) 기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, 최대 3년의 지원 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지원(단, 1회에 한함)
 - ※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
 - ※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

------ < 재도전 특별지원 내용 예시 > -----

- (예시 1)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B연구원 :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(잔여기간 6개월 이상)
- (예시 2) 기존에 2년 10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C연구원: 지원불가(잔여기간 6개월 미만)
- 참여인력은 과학기술연구개발 또는 과학기술서비스 직무 수행

----- < 업무 내용 예시 > -----

- 기초연구, 기술 및 제품 개발, S/W 개발, 산업디자인, 특허 조사·분석, 시장 기술조사
- 연구장비·기자재 운용, 설계, 도면의 작성, 가공·조립, 실험·검사·측정
- 전문적 연구지원, 정보 가공·분석, 특허출원
- 시제품 설계 시험·제작. 기술마케팅. 기술영업. 기술협력 등
- ※ 연구행정직 불가

1. 신청 방법

- 가. 신청 기간: 2023년 2월 27일 ~ 4월 9일 23:50
 - 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- 나. 신청 조건: 근무(예정) 기관 또는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
 - ※ 기관 또는 인력 단독 신청 불가
 - ※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-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(별첨자료 참고)
- 다. 신청 방법: W브릿지 사이트(www.wbridge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 - %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\rightarrow 일자리 \rightarrow 경력복귀지원 \rightarrow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- ※ W브릿지 로그인ID 1개당 신청서 1건 작성 가능
 - 1개의 기관에서 여러 명의 활용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, 활용책임자별로 ID 생성하여 신청하여야 함(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ID 생성 가능)

2. 제출 서류

가. 신청 인력

구분	제 출서 류	제출 시 유의사항	비고
1	사업신청서	-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	필수
2	졸업증명서 사본	-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	필수
3	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	-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 발급 - 개인 → 증명원 신청/발급 →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→ 고용, 상용 선택 후 조회 → 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→ 증명원 출력 - 개별사업장, 선택 사업장 이력내역서 불인정 - 각 차수별 신청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	필수
4	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	-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발급 -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"3개월" 선택 →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(전체 화면 캡쳐) - 사업 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	필수
5	경력증명서	-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	해당시
6	근로계약서	-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턴 또는 시간제 인력의 경우 -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	해당시
7	기타	-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해당시

나. 신청 기관

구분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	비고
1	사업신청서	-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		필수
2	사업자등록증	_		필수
3	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(대학, 공공연 제외)	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-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-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-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		필수 (택1)
4	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(대학, 공공연 제외)	- 2020~2022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국세청 또는 회계사(세무사) 확인(원본/날인) - 2022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9~2021년 재무제표 제출 ※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, 설립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		필수
5	가점 증빙서류	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※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		해당시

다. 신청 시 유의사항

○ 기관과 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함

-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
-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
-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

1. 평가 방법

- 가. 평가 방법: 신청서 및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
- 나. 평가 결과: 개별 통보

2. 평가 기준

- 가. 요건심사: 기본 자격요건 및 재무건전성 등 심사
 - 신청 기관: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부합성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
 - ※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,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 결과 5점 이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
 - 신청 인력: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부합성,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
- 나. 전문가평가: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 ※ 60점 미만 탈락
 - 신규 지원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 기관	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	- 여성인력 활용현황(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) -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의 구체성(업무 및 교육·훈련) 등	15
평가	연구개발역량 및 인력활용 인프라	- R&D 수행 규모 및 성과의 우수성 등 - 근무여건의 우수성(인건비, 근무시간, 복지제도) 등 -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	25
인력	경력단절 극복 및 유지 계획	- 경력단절 원인의 해결현황 및 극복의지 - 향후 역량개발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	20
평가	연구(업무)수행 역량	- 기존 경력 기간 및 경력의 우수성 -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	20
매칭 평가	·		20
합계 10			

○ 재도전 특별지원

평가항목		평가지표		
	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	- 여성인력 활용현황(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) -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의 구체성(업무 및 교육·훈련) 등	15	
기관 평가	연구개발역량 및 인력활용 인프라	- R&D 수행 규모 및 성과의 우수성 등 - 근무여건의 우수성(인건비, 근무시간, 복지제도) 등 -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	25	
인력	경력재단절 극복 및 유지 계획	- 기존 사업중단 사유 및 복귀를 위한 노력 현황 - 향후 역량개발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	20	
평가 	연구(업무) 수행 성과	- 기존 사업참여 기간의 연구(업무)성과 - 기존 사업참여 기간 동안 역량개발 등 노력한 내용	20	
매칭 평가			20	
합계				

다. 우대가점

평가항목	평가지표		
	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	1	
	기관이 지방(서울, 경기, 인천 외의 지역)기업인 경우	1	
	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	1	
	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	1	
가점	기관이 우수기업연구소 선정 기업인 경우	1	
	사업 참여인력 고용유지 기관(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여성과학 기술인을 3년의 사업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)	1	
	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 ※ 신청 시 정규직 채용(예정)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정규직 채용이 아닐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	2	
감점	최근 3년 이내('20~'22년) 최종성과평가(3년 종료 시)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(활용책임자)	-2	
1	최근 3년 이내('20~'22년) 정당한 사유* 없이 협약 중단 경력이 있는 기관(활용책임자)	-3	

^{*} 참여인력의 취·창업, 임신·출산·육아, 가족구성원 돌봄, 참여인력 또는 활용책임자 본인의 사고·질환 등

-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필수
- 참여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
- 참여인력은 지원 기간 동안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
- 동 사업은 과제당 사업비가 소규모이고,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인 건비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간접비 계상 불가
- 사업의 수혜를 받은 참여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
 -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,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,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
 -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(활용책임자) 및 인력은 상호 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,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
- 참여기관 및 인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1회에 한함)

정부지원금 산정 안내(트랙1 기준)

□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: 학·석사 2,100만원/연, 박사 2,300만원/연

- 참여 기업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참여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
 - ※ 기준연봉 :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 (기준연봉 초과 가능)
 - ※ 기준연봉 산정방법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- 정부지원금의 5%(학·석사 1,050,000원/박사 1,150,000원)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

<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>

최종학력	기준연봉		정부지원금(12개월)	
의 중 의 역	(전 일 제)	인건비	연구활동비 계	계
학·석사	3,000만원/연	19,950,000원	1,050,000원	21,000,000원
박사	3,300만원/연	21,850,000원	1,150,000원	23,000,000원

※ 정부지원금: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(1년 기준)

□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

- 시간선택제 채용 시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
 -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≥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
 -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A(석사)의 연봉이 3,200만원일 경우
 - → 석사의 기준연봉이 3,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
 - → 정부지원금 2.100만원 전액 지급
 - 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<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

[계산식]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전일제 근무 시 연봉 ×정부지원금 전액

- ※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참여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
-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B(박사)의 연봉이 2,800만원일 경우

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,500만원)

- → 박사의 기준연봉이 3,3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
- → <u>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</u> 전일제 근무 시 연봉 ×정부지원금 전액 = $\frac{2,800만원}{3,500만원}$ ×2,300만원 = 1,840만원 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참여 기업에서 확인)

신청 자격요건

□ (인력) 동등학력 인정요건
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,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

□ (기관) 기초연구진홍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기관

제6조(기초연구사업의 추진)
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3.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- 4. 국공립연구기관
- 5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
- 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- 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- 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- 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- 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6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6의2.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- 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신청 제한 사항

□ 기관 제한 사항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의하여 국가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
- 동 사업은 채용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, 3년 이상 채용 가능해야 함 - (트랙1) 과제지원의 경우 '인턴'으로 인력 활용 불가
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임금체불, 노동법 위반 등 연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기관
- 다음의 '신청제외 기관'에 해당하는 경우(비영리기관 제외)

< 신청제외 기관 >

- 1. 기업의 부도
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5.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
-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□ 인력 제한 사항

-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중복지원 불가)
 - ※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: 워크넷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
 - ※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
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신청기관의 기관장(사업주)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※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< 친족관계>

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】

- 1. 6촌 이내의 혈족
- 2. 4촌 이내의 인척
- 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
- 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…직계비속

사업 연간일정

절차	내용	수행주체
사업 공고	·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모집 공고	WISET
<u> </u>		
사업 신청	· 신청서 접수(온라인) · www.wbridge.or.kr	참여기관 및 인력
1		
선정평가	· 적격성 평가 결과 및 지원대상 선정	WISET 평가위원단
1		
협약체결	· 참여 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접수처에 신청	참여기관
사업비 지급	·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	WISET/지역사업단
<u> </u>		
사업 수행	· 참여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· 참여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· 교육훈련 및 멘토링 참여	WISET/지역사업단
1		
교육·멘토링 지원	·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	참여인력 WISET/지역사업단
1		
중간점검 및 현장컨설팅	ㆍ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컨설팅 실시	WISET/지역사업단
1		
연차평가	· 계속지원여부 평가	WISET/지역사업단
<u> </u>		
최종보고서 접수 및 사업비 정산	ㆍ 사옹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	WISET/지역사업단

- ※ 지원 절차는 각 상·하반기 별도 진행
- ※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